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02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 의 자 : 정병용 의원

1. 제안이유

성년이 된 하남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급대상(안 제4조)
- 라. 지급신청, 지급시기(안 제6조~안 제7조)
- 마. 환수조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 마.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8. 3. ~ 8. 7.

- 제출방법 : 방문(주말·공휴일 제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기재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자치행정 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5182-1248
 - F A X : 031-790-6529
 - 홈페이지 : <https://council.hanam.go.kr/> (의안정보 → 조례안 예고)

바. 부서의견(청년일자리과)

- 제4조(지급대상) : 수정 요구

현행안은 지급대상을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성년이 되는 전년도 1월 2일 이후 전입한 청년은 신청 시점에 실제 1년 이상 거주했다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집행부 의견 반영

: 제4조(지급대상): 거주기간 산정 기준을 '1월 1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여,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수정

- 제8조(환수조치) : 수정 요구

반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 또는 수정 필요.

⇒ 집행부 의견 반영

: 환수 사유를 제4조 요건 미충족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징수 규정은 삭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되는 하남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
2. “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하남시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하남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하금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축하금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하며,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되는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등)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년 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급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이후

제4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2026. 7. 23. 현재)

연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	2022-03-02	기획예산실	
2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	2023-03-27	인구정책과	
3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2024-11-19	인구교육 정책실	